



【첨부1】전자협약으로 별도 제출 불필요 (내용만 확인)

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사업 협약서

○ 사 업 명: 2019년도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

○ 과 제 명 : VR/AR 기술이 결합한 차세대 개인 맞춤형 조종사 훈련 플랫폼 연구

○ 총 사업기간 : 2019년07월01일부터 2020년06월30일까지(12개월)

○ 당해년도 협약기간 : 2019년07월0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6개월)

○ 사업비 :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계	엽 /게
2019년					
(2019-07-01 ~	100,000	0	0	0	100,000
2019-12-31)					
2020년					
(2020-01-01 ~	100,000	0	0	0	100,000
2020-06-30)					
합계	200,000	0	0	0	200,000

○ 총괄책임자

소속 : 단국대학교 직위 : 교수 성명 : 이재동

○ 협약당사자

전담기관 :

(기관명)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표자) 석제범

주관기관 :

(기관명)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황석호

참여기관 1:

(기관명) Kent State University (대표자) Beverly Warren





위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 관리 지침」등 기타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의 신의성실 수행)

①본 협약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정보통신 기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관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따라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인력양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시행에 대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당사자들의 권한과 책임)

-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가.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신규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라.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 마.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바.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 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가.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 나.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 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 라.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 마. 최종보고서의 제출





- 바. 과제수행 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 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 · 분석 · 평가자료 제출
- 아.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 자.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 차.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 카.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 ③주관기관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과제의 개발 성과 및 참여인력 등의 정보 수집·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전담기관은 본건 과제의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주관기관이 협약체결 시 별도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에 기록된 입금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다음과 같이지급하다.

(단위:원)

해당연도	지급차수	지급예정일	지급예정액
2019년	1	2019-07-01	100,000,000
2020년	1	2020-01-01	100,000,000

-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부지원금의 지급시기·지급방법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가. 사업비의 절감 또는 사업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 나.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다.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 라.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 요한 경우
- 마.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전담기관의 통제범위를 초월 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 ③그 밖에 사업비의 신청,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관리지침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평가)

①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제13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전담기관은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게 사업비의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주관기관은 정산금을 관리지침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기간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④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지침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7조(사업 추진결과 보고 및 평가)

- ①주관기관은 제13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진도점검에 필요한 실적보고서 등을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 평가 절차 및 기준, 이에 따른 후속절차에 관한 상세 사항은 제13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8조(관계 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 ①주관기관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그 밖에 본건 과제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제출, 통지 및 보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변경)

- ①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제13조 또는 제13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건 협약의 내용 또는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정부의 예산 사정, 연차별 실적 또는 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나.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정책의 변경 기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계속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그 밖에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제13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해약)

- ①전담기관은 제13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관기관과의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가.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 나.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및 보고서의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 위반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한 경우





- 다.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 마. 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실패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 치가 내려진 경우
- 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아.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자.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차.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 카.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타. 총괄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제48조에 따라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 파.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연구개발 성과 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주관기관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본 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의 집행내역과 사용잔액을 전담기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하며, 전담기관의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전담기관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③전담기관은 본건 협약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주관기관에게 협약 제13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결과의 활용)

①주관기관은 사업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다.

제12조(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성과물의 귀속, 유지,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3조(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조치)

①장관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참여제한 조치를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가.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 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다.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단독 명의 또는 기관·개인의 공동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단, 공동 명의의 경우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라.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바.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사. 과제 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아. 사업비의 유용ㆍ횡령 등 사업 외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자.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차.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카.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의 변경 · 무효화 · 양도된 경우
- 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파. 관련 규정상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 하.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 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 ②전담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귀책사유에 따라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각 제재 또는 환수 사유 및 절차,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규정 및 관리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이의 신청)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본 협약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 및 정산결과, 제14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 ①주관기관은 관리지침,「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 관리지침」및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9조에 기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16조(비밀보장의 의무 등)

- ①주관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전담기관 및 상호간의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②주관기관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홍보 또는 쟁송 등 해당기관의 수혜를 위해 계약 상대자의 합의 없이 본 계약에 의거 제공된 기술개발결과의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계약상대자의 명칭, 상표 또는 의장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 (기타)

- ①본 협약상 사업수행자가 본 계약에 의한 사업의 성과 및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글로벌핵심인재양성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 가. 국문표기시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글로벌핵심인 재양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 나. 영문표기시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MSIT(Ministry of Science, ICT), Korea, under the High-Potential Individuals Global Training Program)(과제번호) supervised by the IITP(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 ②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의 해석에 따른다.
- ③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전담기관, 주관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 1. 사업계획서 1부
- 2. 기타 협약시 제출서류 각 1부

2019-06-24

: 가

1548

•

152 122 ()